

의안번호	제487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
운영 조례안

발의자	박진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월 8일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(박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월 8일
발의자 : 박진희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지현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, 단장의 직무, 회의의 소집 및 운영, 안전 검토 및 의견청취, 간사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해구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)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심리지원단의 구성) 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재난심리, 정신건강,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2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 등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「충청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센터장
5. 상담학회, 재해구호협회 등 심리회복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의 소속 임직원
6. 심리회복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7. 그 밖에 심리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한다.

③ 새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단원의 임기)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리지원단을 대표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의 소집) ①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,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

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회의 운영) ①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안전 검토 및 의견 청취)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안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상정된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제10조(수당 등의 지급)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촉 단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, 안전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·운영 중인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 단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직 무 윤 리 사 전 진 단 서

연번	진 단 내 용	체 크 사 항	
1	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[]	아니오 []
2	심리지원단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[]	아니오 []
3	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 등의 당사자이다.	예 []	아니오 []
4	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[]	아니오 []
5	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[]	아니오 []
6	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[]	아니오 []
7	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[]	아니오 []
※ ‘예’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직무윤리 서약서

직 위:

성 명: ○ ○ ○

상기 본인은 심리지원단의 단원(단장)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2. 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3. 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4. 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5. 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
6. 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7. 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8. 그 밖에 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○ ○ ○

(서명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관계법령

□ 재해구호법

제8조의2(중앙 및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중앙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을, 시·도에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시·도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각각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□ 재해구호법 시행령

제4조의4(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시·도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2. 지역 보건·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
3.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
4. 심리회복지원 관련 자원 운영방안 마련
5.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심리지원단의 단장(이하 이 조에서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7. 28.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(이하 “대규모재난”이라 한다)의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7. 26.>

<이하 생략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13조(대규모 재난의 범위)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. <개정 2012. 8. 23., 2014. 2. 5.>

1.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중앙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재난
2.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

[전문개정 2010. 12. 7.]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·피해자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 참석 및 안전 심의에 따른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제9조(수당 등의 지급) ① 회의 등에 출석한 위촉직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단장은 미리 안전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5년간(' 24~' 28년) 추계

- 기 운영중인 위원회로 연1회정도 안전 심의 중이며, 당연직 5명(공무원), 위촉직 12명(민간전문가)으로 구성되어 위촉직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
- 연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및 재난발생 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하여 매년 대면심의 1회, 서면심의 1회 실시
 - 대면심의 : $[100\text{천원}^{(\text{기본})} + 30\text{천원}^{(\text{2시간초과})} + 50\text{천원}^{(\text{원거리수당})}] \times 12\text{명} = 2,160\text{천원}$
 - 서면심의 : $30\text{천원}^{(\text{100p이내})} \times 12\text{명} = 360\text{천원}$

나. 추계 결과 : 2,52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-		-	-	-	-	-	-
세 출	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	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재원 조달	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자체 수입	소 계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	지방세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군비	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, 자담 등)		-	-	-	-	-	-